

표지 재교부신청서

1.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표지 번호:
2. 분실일시:
3. 분실장소:
4. 분실사유:

위와 같이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「공직선거법」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·대담용 자동차·확성장치·녹음기·녹화기 등에 부착하는 표지를 (잃어버려)·(못쓰게 되어) 재교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[소환청구인대표자 ○○○ 인
주민소환투표대상자 ○○○ 인]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- 주: 1. 분실장소와 분실사유는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.
2. 표지를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.~4.는 적지 않습니다.